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

(계약방식 미래채권담보대출용)

주식회사 하나은행 앞

본인(이하 "판매기업"이라 합니다)은	_(이하	"구매기	업"이라	합니다)과	체결한	물품 -	등 공급계	계약서를	근거로	하여	(주)하
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「계약방식 미래채권담」	보대출」	약정을 위	위한	년	월	_일자	여신거리	배약정서	(이하 "	원 약	정서"
라 합니다)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하며, 은행의 「	은행여신	<u> </u>	본약관(기업용)」이	적용됨	을 슝입	인합니다				

제1조 (목적)

이 약정은 구매기업과 물품 등 공급계약을 체결한 판매기업의 구매기업 앞 원활한 물품 등의 공급을 지원하는 은행의 「계약방식 미래채권 담보대출」이용과 관련한 추가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약정체결의 기본사항)

판매기업은 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합니다.

- ① 물품 등의 수량, 품질, 가격, 사후관리 등 공급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사이에 해결합니다.
- ② 서울보중보험이 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판매기업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, 은행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-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① "구매기업"이라 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.
- ② "판매기업"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.
- ③ "물품 등"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공급하는 일체의 재화 및 용역을 말합니다.
- ④ "계약서"라 함은 물품 등의 공급을 위해 체결하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의 도급계약서, 물품공급계약서, 물품주문서, 구매승인서 등을 말합니다.
- ⑤ "서울보중보험"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은행과 약정한 대출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보험중권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금전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은행이 입은 손해를 보험중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.
- ⑥ "상환처리비율"이라 함은 구매기업의 결제대금 중 판매기업의 대출금 상환에 우선충당하여야 하는 원금의 비율을 말하며, 판매기업과 서울보중보험이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- ⑦ "대출실행예정일"이라 함은 판매기업과 서울보중보험이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출 취급 가능일자를 말하며, 판매기업은 은행과 약정한 원 약정서에 따라 대출실행예정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⑧ "대출만기예정일"이라 함은 판매기업과 서울보즁보험이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말합니다.

제4조(대출취급방식 및 상환처리비율)

① 대출취급방식

은행과 구매기업 및 서울보중보험의 3자간 협약에 의해 정한 바에 따라 계약방식 미래채권담보대출의 취급방식을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. (판매기업은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"□"에 "√"표시합니다)

대출취급방식(택1)	상품의내용
 계약방식 미래채권담보대출 I 	구매기업의 결제대금을 가상계좌로 수령하여 상환처리비율만큼 대출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판매기업의 약정계좌로 입금하는 방식
□ 계약방식 미래채권담보대출 Ⅱ	만기일에 판매기업이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

② 상환처리비율

취급방식(택1)	상환처리비율
 계약방식 미래채권담보대출 I 	 ◇ 구 매 기 업 명 : () ◇ 상환처리비율 : ()% 구매기업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금 중 상환처리비율에 해당하는 원금을 이 결제제도와 관련한 대출금에 우선충당합니다.(단, 이 대출금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관련 이자를 추가 징구합니다.)
□ 계약방식 미래채권담보대출 ॥	◇ 구매기업명 : ()◇ 만기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





제5조 (입금 및 결제계좌의 지정)

이 약정에 의한 공급대금 입금계좌와 대출금 이자 납입, 원금 상환을 위한 계좌는 다음 계좌로 약정합니다.

※ ㈜하나은행에 개설한 판매기업 명의의 계좌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

예금주명	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	계좌번호

제6조 (대출의 제한)

다음 각 항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됩니다

- ① 구매기업과 은행 간의 업무협약이 종료되는 경우
- ② 판매기업에게 「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」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③ 판매기업이 은행에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거나 불건전여신이 있는 경우 및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
- ④ 판매기업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- ⑤ 판매기업이 한국신용정보원의 "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"에 따른 연체정보, 대위변제대·지급정보, 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 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하거나 등록된 경우
- ⑥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판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, 파산절차,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경우
- ⑦ 판매기업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경우

제7조 (상환 의무)

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「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, 본인은 은행의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합니다.

- ① 「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」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 발생 시
- ② 허위, 가공거래, 융통 등에 의해 체결한 계약을 기반으로 대출이 취급된 경우
- ③ 서울보중보험의 보험 효력을 상실한 경우
- ④ 구매기업과 체결한 물품 등의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경우

제8조 (정보제공의 동의)

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구매기업 및 서울보증보험에 본인에 관한 약정정보 및 사업자정보, 대출내역, 계좌정보 등을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.

제9조 (추가약정의 효력)

- ① 이 약정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원 약정서의 약정기한까지 유효합니다.
- ② 이 약정서, 원 약정서, 「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」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, 그 다음으로 원 약정서, 「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」의 순서로 합니다.

채무지	h(본인):	(인)
주	소 :		_
여대	보 쥯 인 :	(01)	`
전 네 - 주	ደ ፓ ቪ ·	(U	/

20

녇

월

일

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



